

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3. 1. 24.(목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김충식 부위원장
홍성규 상임위원
김대희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의결 가 ~ 의결 마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 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09-30차 전원회의('09.7.9), 제2011-17차 전원회의('11.3.21), 제2011-67차 전원회의('11.11.0), 제2012-48차 전원회의('12.8.31)에서 의결한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'에 해당됨
- 보고 가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1(서면보고)제1항에 따른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'의 안건에 해당됨

② 의결사항

가.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- SK브로드밴드(주)
- (2013-04(서)-011)

○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15조제1항에 의거, SK브로드밴드(주)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Digital보급형상품 출시

- 종래 상품 대비 중간 요금대의 Digital보급형(13,000원) 상품

< 신규상품과 현재상품 비교표 >

(요금:원)

구분	(현) Digital실속형	(신) Digital보급형	(현) 선택형
기본요금	15,500	13,000	10,000
1년 약정	14,000	11,700	8,700
2년 약정	12,500	10,400	7,400
3년 약정	11,000	9,000	6,000
3년약정+인터넷	9,000	7,000	6,000
채널 수	104 (90)	70 (50)	38 (25)
VOD	VOD 3만편이상	VOD 4천편 이상	VOD 2만편 이상

② 선택팩 (A la Carte) 추가

- 고객 선호도가 높은 골프팩, 지상파·스포츠팩 등 선택형상품 2종 출시

< 신규 채널팩상품 구성내역 >

구분	Golf Pack	Sports+ Pack
상품 유형	골프·해외채널 중심	지상파 MPP 중심
요금/채널수	2,000원 / 6개이상	2,000원 / 6개이상
주요 채널	SBS골프, j골프, NHK, CNN, Bloomberg, National Geographic	MBC스포츠+, SBS ESPN, MBC net, KBSN 스포츠, MBC Life, KBS Prime

※ 현재 4종의 채널팩 서비스 중(영화·시리즈 / 라이프 / 스포츠·레저 / 외국어·교양)

나. 한국교육방송공사의 'EBS 다크프라임' 재심에 관한 건 - (2013-04(서)-012)

○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방송법」 제100조에 의거,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'EBS 다크프라임' 프로그램 제재조치 처분(12.11.16)에 대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심 청구(12.12.11) 건에 대하여, 원안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처분대로 '주의'를 명하기로 의결함

【 원심결정의 개요 】

▪프로그램명	EBS-TV, 'EBS 다크프라임' (2012.9.11.(화), 21:50 - 22:45)
▪제재 조치	주의 (재연기법의 사용)
▪위반내용	○ 아동성범죄자가 ▲성폭행을 시도하다 아이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아이를 방치한 채 도망친 사례와 ▲여자 아이를 창고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례 등을 재연 형태로 소개하면서, 해당 장면에 어린이를 출연시켜, 「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」 제39조(재연기법의 사용) 제1항을 위반함

다. (재)극동방송에 대한 외국자본 출연 승인에 관한 건 - (2013-04(서)-013)

- 「방송법」 제14조제1항에 의거, (재)극동방송에 대한 외국자본 출연 승인 신청에 대해 원안대로 (재)극동방송이 미국 극동방송으로부터 2013년도에 미화 120만 달러를 출연 받는 것을 승인하기로 의결함
- 주요 내용
 - ① 신청인 : 재단법인 극동방송(대표자 : 김장환)
 - ② 출연인 : 미국 극동방송(Far East Broadcasting Company - USA)
 - ③ 출연 예정 금액 : US \$120,000(약 12.6억원)
 - ④ 출연목적
 - 방송을 통한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 극동방송 신사옥(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) 건축을 위한 재정 지원
 - 미국 극동방송은 설립목적 및 운영취지가 동일한 전 세계 선교방송국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극동방송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

라. 「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일부개정안 및 공중전화 적정대수에 관한 건 - (2013-04(서)-014)

-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과 공중전화 적정대수 산정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함
- 주요 내용
 - ①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(안 제4조)
 -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기본료/월정액 감면 한도액을 2,000원 상향 조정 (13,000원→15,000원)
 - ② 공중전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기준 변경 (안 제9조, 부칙 제3조)
 -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에 적용되던 공중전화 간접적 편익 차감 비율을 시내전화 간접적 편익과 동일하게 적용(30%→10%)

- 공중전화 간접적 편익 차감 비율 조정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을 공중전화 환경개선에 활용토록 이행계획서 등 정부에 제출

③ 공중전화 적정대수 재산정

- 공중전화 적정대수는 '11년 대비 8,756대 감소(10.9%)한 71,519대('14년)로 하되, 공중전화 감축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3년('12년~'14년)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

※ 적정대수 : 80,275대('11년) → 77,356대('12년) → 74,437대('13년) → 71,519대('14년)

○ 위원회 보고 후 변경사항

- 행정예고시 사업자가 종량형/정액형으로 구분하여 요금감면 시행시 전산시스템 변경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이유로 통합적용을 요청
- 통합적용시에도 이용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요금감면의 조기 시행이 가능하므로 사업자인 수용 (안 제4조)
- '공중전화 보편적역무 집행결과 및 이행계획서 제출'을 규정한 부칙 안 제3조에 상위 법령 근거조항을 명시하라는 규개위 예비심사 권고의견 수용

○ 향후일정

- '13. 2. 1 : 고시 개정(안) 관보게재 및 시행

마.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- (2013-04(서)-015)

- 「방송법」 제35조제2항 및 「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, 원안대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을 의결함

<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명단(총 9인) >

구 분	성 명	성별	전·현 직
위원장	김충식	남	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
방송 등 언론 분야	김세원	여	선문대학교 교수
	이재갑	남	문화방송 제작 본부장(전) (주)소프트라인 미디어사업부 대표
교육, 문화계	강규형	남	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
	정인숙	여	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
법조계	전경희	여	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
	박민영	남	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
시청자 단체	강정화	여	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
기타 전문가	박성래	남	삼정회계법인 부대표(회계사)

※ 임기 : '12.12.20. ~ '13.12.19.

③ 보고사항

가. 「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」 제정안에 관한 사항
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 내용

①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

- 방통위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지정대상 기관의 수와 업무 범위 및 신청 방법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공고하고,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인증기관 신청 건에 대하여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요건·능력을 평가하여 지정여부를 결정
- 방통위는 인증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제출받고, 인증기관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음

② 인증기관 등의 인증 심사 및 기준

-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개월 이상 운영하고, 인증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지정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심사계약을 체결
- 인터넷진흥원 또는 지정된 인증기관은 선임심사원 1명을 포함한 인증심사원으로 심사팀을 구성하여 인증신청 기관에 대해서 기업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등의 심사를 진행

③ 인증서 관리 등 기타

- 인터넷진흥원 또는 지정된 인증기관은 인증서의 번호, 발급일, 유효기간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함
- 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때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지정된 인증기관에 추가발급 신청서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인증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, 직접 경비 등으로 구성하고, '중소기업기본법'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감면 가능